

주·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『도로교통법』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(거소)불명·이사, 수취인 불명,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9년 9월 18일

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



1. 제 목 : 주·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19. 09. 18 ~ 2019. 10 04
3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4. 공고내용

가.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·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

나. 과태료 : (일반지역) 승용차 40,000원 / 승합차·4톤 초과 화물차 50,000원

(어린이보호구역) 승용차 80,000원 / 승합차·4톤 초과 화물차 90,000원

※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% 감경 【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】

다.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공고기간 내
- 제출대상 :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,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
- 제출내용 : 의견진술서, 증빙자료
- 제출방법 :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방문, 전화(052-290-3990), 팩스(052-290-3959) 이용

※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

5. 문 의 :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(교통과징계) ☎052-290-3990)

※ 붙 임 : 공시송달대상내역 1부.